

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1 19(수)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11. 25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12. 08(화) 제20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장동기)

-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
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세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 개정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
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,
- 우편법에 따라 보통우편을 “일반우편”으로 변경과 도세와 군세의
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를 추가하여 그중 목적세를 우선징수
순위로 추가하였으며,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

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세 3회 체납과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로 하였으며,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보통우편 송달부)”를 “(일반우편 송달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전단 중 “보통우편”을 각각 “일반우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후단 중 “우편물 접수인”을 “통신날짜도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하여야 한다.”를 “하고, 도세나 군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허가 등의 제한)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내”를 “내의 경우에 한한다.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공탁하거나 또는 평창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”을 “군”
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군세의 수납)”을 “(세무공무원의 수납)”으로 한다.

제38조 제2호 중 “같은 조 제5항”을 “영 제86조 제1항”으로 한다.,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